

**인증심사 방법**(제39조제1항 관련)

I. 방법

인증심사종류	인증심사방법
1. 최초인증 심사	<p>가. 내부심사 실적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체제가 수립되어 3개월 이상동안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(사업장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별로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의 안전관리체제가 시행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포함한다)를 심사한다.</p> <p>나.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II에 따른 분사무소의 수 이상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.</p> <p>다.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는 제34조제1호에 따라 제출된 문서를 먼저 심사한 후에 행한다.</p> <p>라.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는 사업장에 대한 최초인증심사가 완료된 후에 행한다.</p>
2. 갱신인증 심사	<p>가.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 상태를 심사한다.</p> <p>나. 제1호나목은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에 대한 갱신인증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</p>
3. 중간인증 심사	<p>가. 안전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.</p> <p>나. 제1호나목은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에 대한 중간인증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</p>
4. 임시인증 심사	<p>가. 사업장의 경우: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별표 11 제1호,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, 아목·차목·카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상태 및 그에 대한 시행계획</li> <li>2) 별표 11 제1호,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계획 및 그에 대한 시행계획</li> <li>3)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 도입 후 3개월 이내에 내부심사를 시행할 계획</li> </ol> <p>나. 선박의 경우: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가목 1)에 관한 선장 및 선박직원(「선박직원법」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)의 숙지여부</li> <li>2) 항해 전 해상중사원에 대한 필수정보 제공여부</li> <li>3) 선박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내부심사를 시행할 계획(별표</li> </ol>

	11 제2호를 적용받는 선박은 제외한다)
	4)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가 해상종사원들이 이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다.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함에 따른 인증심사는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를 실시한 후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를 실시한다.
5. 수시인증 심사	가. 안전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. 나. 제1호 나목은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에 대한 수시인증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<p>※ 비고</p> <p>1.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자는 해당 합격일부터 사업장에 대하여는 12개월 이내에, 선박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위 표 제4호가목1) 및 2)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수립·시행 계획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2.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자는 3개월 이내에 위 표 제4호가목3) 및 같은 호 나목3)에 따른 내부심사계획에 따라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3. 인증심사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서,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재지에서 행한다.</p> <p>4. 인증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도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5. 그 밖에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.</p>	

## II. 인증심사대상 분사무소의 수

분사무소수	최초·갱신인증심사	중간인증심사
1	1	1
2	2	1
3	2	2
4	3	2
5	3	2
6	3	2
7	4	3
8	4	3
9	4	3
10	5	3
11~17	6	4
18~24	40퍼센트(소수점 이하는 절사함)	4
25 이상	40퍼센트(소수점 이하는 절사함)	20퍼센트(소수점 이하는 절사함)